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1004호 전화:(02)784-3501/2
팩스:(02)784-3504 / e-mail: kofod21@hanmail.net

공동대표 단체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기독교보호사회 · 노들장애인야학 · 다운회 · 대전장애인총연합회 · 대한외수족연구회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밀알복지재단 · 부림의전화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서울경인서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 · 서울공동리봉사회 · 성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스카이크렐 · 시각장애인여성회 · 여성장애인자조모임"다올" · 열린네트워크 · 울산장애인총연합회 ·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인행동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까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 장애수업사추모사업회 · 제주장애인총연합회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프렌드케어 · 태화생애집 · 푸른하늘 · 한국교봉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 한국작은키(언골무형성증)모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한국재가장애인협회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한국DM(한국장애인연맹) ·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이상 가나다順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 변경택 · 이예자 · 장기철 · 주신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및 NGO담당

발 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홍보팀 (담당 남정휘 02-783-0067/H.P 011-207-6525)

제 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시정위원회는 대통령산하 독립적 시정명령을 갖는 기구로!

날 짜 2004. 7. 22. (총 1매)

* 본서 작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 개정이 필요한 것이 타당하다 : (남정휘)
남정휘 2004. 7. 22. 성명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는 법무부로!

시정위원회는 대통령산하 독립적 시정명령을 갖는 기구로!

전장애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적으로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를 구성하여 그동안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였다.

16대 대통령공약으로 근거한 5대 사회적 차별영역(여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근로자)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지난 5월 달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재 국가인권위에서의 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에 관해 법률제정이 어느 때 보다는 고조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장애인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구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이 아니라 장애인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고 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 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각종차별을 대해서 관장할 수 있는 법무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소관부처로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지난 1997년 편의증진법 제정 당시에도 주무부처는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역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야함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 결정됨으로 인해 편의시설 미설치를 방치하고, 또한 매우 미흡한 제재조치를 시행함으로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내지 못하는 死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러한 한심한 경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는 법무성에서 다루고 있으며, 호주는 연방정부, 검찰성, 법제실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후생성(복지부 역할과 유사)이 아닌 관방성(총리직속부처)에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법률적 경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결정일 것이다.

사회적 차별영역과는 달리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와 '차별'이라는 복합적 부분에서 발생됨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또한 여타의 차별영역이 대부분 '고용영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장애인차별은 교육·노동·주거·의료·복지·재화나 용역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남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며, 아울러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시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시정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며, 이로 하여금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이고 시정명령권한을 지닌 장애인차별금지시정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며,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이고 시정명령권한을 지닌 장애인차별금지시정위원회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어 장애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실현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장차법의 소관부처는 법무부로 하라!!
2. 대통령 산하 독립적이고 시정명령권한을 지닌 장애인차별금지시정위원회를 설치하라!!